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상계관세 부과 사례 분석을 통한
한·중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장 범

2023년 02월

상계관세 부과 사례 분석을 통한 한·중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라 공 우

장 범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02월

장 범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02월



A Study on the Korea and China's Response Strategy by Case Analysis of Countervailing Duty

Fan Zhang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ebruary. 2023.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February. 2023.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구성	3
II. 상계관세의 의의 및 선행연구 분석	4
1. 상계관세의 개요	4
1)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개요	4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협정)	6
2. 선행연구 및 분석	8
1) 국내 선행 연구 분석	8
2) 외국 선행 연구 분석	14
III. 한·중 상계관세 조치 현황 및 관련 규정	21
1. 중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21
1) 중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21
2) 중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25
2. 한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33
1) 한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33
2) 한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35
3.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38
1)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38
2) 미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39

IV. 한·미 및 중·미의 보조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44
1. 중·미 태양광 전지제품 보조금 분쟁	44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44
2) 분쟁의 주요 쟁점	47
3) 결과	50
2. 한·미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	51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51
2) 분쟁의 주요 쟁점	53
3) 결과	54
3. 문제점 및 시사점	56
1) 중국의 보조금 문제점	57
2) 중국의 대응전략	59
3) 한국의 보조금 문제점	62
4) 한국의 대응전략	63
V. 결론	65
1. 요약	65
2. 연구의 한계 및 방향	66
참고문헌	67
Abstract	70

[표 차 례]

<표Ⅱ-1> 국내 상계관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12
<표Ⅱ-2> 외국 상계관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19
<표Ⅲ-1>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사건 추세 (2004년-2021년)	22
<표Ⅲ-2> 경제발전 수준별 상계관세 조사 제소국과 피소국 순위	22
<표Ⅲ-3>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발동 국가 및 건수(2004년-2021년)	23
<표Ⅲ-4> 중국에 대한 산업별 상계관세 조사 건수(2004년-2021년)	24
<표Ⅲ-5>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사건 추세(2014년-2021년)	33
<표Ⅲ-6>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유형별 현황 상위5위(2021년까지)	34
<표Ⅲ-7> 한국에 대한 산업별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건수(1986년-2021년)	34
<표Ⅲ-8> 미국이 한중 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 건수(1995년-2021년)	38
<표Ⅳ-1>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최종판정	45
<표Ⅳ-2> 중·미 태양광 전지 보조금 분쟁 주요 경과	47
<표Ⅳ-3>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서 포함된 조치가능보조금	50
<표Ⅳ-4> 한·미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의 주요 경과	53
<표Ⅳ-5>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판정세율	55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무역의 글로벌화가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장애가 없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GATT, WTO 등 다자간 무역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신보호무역주의도 등장하면서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관세에 대체하여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을 더 많이 운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형태의 복잡성, 다양성, 효과측정의 곤란성, 불확실성, 차별성, 협상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수단 중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WTO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WTO가 출범한 후 2021년까지 총 7,135건의 분쟁 조사개시가 취해졌는데, 반덤핑이 5,973건으로 가장 많고, 상계관세가 624건, 세이프가드 조사가 449건이 발동되었다¹⁾. 반덤핑관세 조사보다 상계관세 조사의 건수가 적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기업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반덤핑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상계관세 조사이다. 반덤핑은 수출업자가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달리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조사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어서 규제당국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은 상품을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해당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이 공

1)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 2022년 8월 25일 기준

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계관세의 원래 목적과 달리 각국에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Agreement)²⁾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보조금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은 상계관세의 활용을 증가함으로써 상계관세조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가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국은 피소국으로 196건 상계관세 조사를 가장 많이 피소되었으며, 제소국으로 17건만을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하였다. 한국의 경우 피소건수는 33건으로 세계 3위의 피소국인데 제소국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한 적이 아직 없다.

특히, 2021년에 미국은 통화 저평가(Currency Undervaluation)를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활용하고 상계관세 조치 시행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조치 및 조사 현황을 분석하고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계관세에 대해 수출국의 경제정책과 수입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시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상계관세조사 조치와 관련한 규정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WTO 보조금협정의 내용과 규정을 알아보고 한·미·중 3개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과 보조금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WTO 체제하의 한·미·중에 대한 대표적인 보조금 분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 및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분쟁을 대응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보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또는 WTO 보조금협정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이라고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로써 이론적 검토와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는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자료와 WTO의 통계자료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은 중·미 태양광 전지 제품 보조금 분쟁사례와 한·미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사례의 배경, 경과, 주요 쟁점 등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중 세 개 국가의 상계관세제도를 파악하고 보조금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논문의 전체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의의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정의, WTO 보조금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미·중 3개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 조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각국의 반보조금에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WTO 체제하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 분석이다. 대표적인 중·미 태양광 전지제품 보조금 분쟁과 한·미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사례의 배경 및 경과, 분쟁의 주요 쟁점 및 결과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상계관세의 의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상계관세의 개요

1)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개요

보조금에 대하여 1776년 Adam Smith의 『국부론』에서 수출품에 관한 공식적인 보조금 제공 관행을 언급하였듯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보조금의 정의에 관해서는 GATT협정 제16조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었다. 한편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GATT협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소득 혹은 가격지원으로 인해 수여자에게 혜택을 부여되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란 특정 산업에 대해 (1) 직접적 자금이전(예: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 대출보증), (2) 정부세입의 포기(예: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혜택 등), (3) 정부에 의한 일반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및 구매, (4) 정부의 자금 공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민간기관에 대해 (1)~(3)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³⁾ 그러나 보조금의 세부사항이 매우 다양하여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성(specificity)이 있어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성격이나 피해의 구제방법에 따라 크게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이란 수출성가에 따라 제공되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이다. 수

3) 김정수·심재희, 『무역정책론』, 2014, p163.

출보조금은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 보조금의 사용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⁴⁾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에 대해 WTO 보조금협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를 두지 않지만 금지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을 제외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는 모든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교역효과는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 피해, 수입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등을 의미한다.⁵⁾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이란 정당한 산업지원정책으로서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지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용보조금에 대해서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른 회원국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때 구제절차가 가능하다.⁶⁾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여 지급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상계관세는 통상의 관세와 달리 해당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내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상계관세는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와 함께 수입국이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계관세는 점차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두 개 국가 간에 분쟁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간에서 다자간제소사건이 많아지고 있다.⁷⁾ 이처럼 상계관세 조치의 활용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

4)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5) 김상만, “WTO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DS 414)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4, 43(0), pp.1170-1171.

6) WTO 보조금협정 제8조 제1항.

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통상법무정책, 2021, p.188.

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협정)

국가 간에 다자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체제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947년 GATT에서 최초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를 규정하였다.⁸⁾ 그 후 동경 라운드에서는 GATT 1947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시키기 위하여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GATT 제6조, 제16조, 제23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 이후에도 국가 간에 보조금과 상계관세 관련 분쟁이 계속되었는데 1994년 WTO 출범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도입된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협정)은 과거 GATT체제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보조금 판단 기준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도입되었다.

WTO 보조금협정은 총 11개 부, 32개 조항, 7개 부속서로 구성되고 보조금의 정의 및 간주유건,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상계조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과도기간제도, 분쟁해결절차 등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제1조, 제2조를 포함하여 보조금의 정의 규정 및 특정성에 대해 마련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협정상 정부의 “재정적 기여” 또는 “가격·소득 지지”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혜택(benefit)”이 가져오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조금은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진 경우에만 협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제3조, 제4조를 포함되고, 협정상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보조금과 국산품사용을 조건으로 한 수입대체보조금이 포함되는 금지보조금에 대한 내용과 일반분쟁해결절차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구제절차가 부여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제5조, 제6조, 제7조를 포함하여 위에서 영거한 바와 같이 조치가능보조금에 관한 규정과 “부정적 효과”에 관한

8) GATT 1947의 제6조에서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제16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규정하였다.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피해, 수입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간주 및 유형 등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허용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9조 중에 나타나는 허용보조금의 정의와 협의 및 승인된 구제절차가 포함된다.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보조금, 산업기술개발을 보조하는 R&D보조금, 그리고 신 환경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설비개선을 보조하는 환경보조금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이는 허용된다. 이 허용보조금에 대해 일반 상계관세절차나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수 없지만 제9조에서 허용하는 구제절차를 방동하기가 가능하다.

제5부에서는 상계조치에 관한 내용을 마련한다.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증거, 협의,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피해의 판정, 국내산업의 정의, 잠정조치, 약속,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소급, 상계관세 및 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판정의 공고 및 설명, 사법적 검토 등내용을 손으로 설명한다.

제6부에서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WTO 보조금협정에 관한 주요규정은 회원국들에게 보조금의 통보 및 감시의무를 부과한 것,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경과조치, 분쟁해결, 최종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요약하면,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GATT체제에서 불명확한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과 허용보조금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제절차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계조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상계관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도 그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은 GATT체제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원화된 분쟁해결양해를 통해 분쟁해결제도는 강제적인 이행장치로 등장하여 구속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과정에서도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기인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조금 관련 규율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개

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허용보조금의 부활문제, 개발도상국의 우대, 수산 보조금등 많은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 DDA협상에서 주요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⁹⁾

2. 선행연구 및 분석

최근 10년간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된 학술지 연구논문이 적은 편이었다. 주로 한·미 보조금 분쟁, 중·미 보조금 분쟁,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다. 현황과약, 사례분석, 규정해독을 통해 본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정책 방향, 보조 전략, 조치 조사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내와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선행 연구 분석

우선 문희은·박도연¹⁰⁾은 한·미 FA 분쟁(DS539)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FA 적용과 관련하여 패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쟁점을 기반으로 FA 적용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A 적용에 앞서 필요정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국의 노력도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킨다고 제시하였다. 필요정보 누락에 대한 책임이 조사대상 기업에 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의무수준의 강화와 해석상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김지은¹¹⁾은 미국 상무부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

9) 이정희, “WTO 및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pp.6-7.

10) 문희은·박도연, “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05(94), 2022, pp.165-189.

11) 김지은,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12(2), 2021, pp.96-117.

였다.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외환 유입 내역 등을 세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은 AFA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전 업무와 관련된 재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면 향후 효율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얼¹²⁾은 수입국의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그에 따른 수출국의 최적 보조금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과 수출국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하여 수입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라 수입국 정부가 최적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출국 정부는 자국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¹³⁾는 한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외 수입규제 현황,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최근 수입규제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국가별 수입규제 동향과 수입규제조치 대응 및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경기회복 등을 위해 보호무역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증가추세에 있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현지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 해소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현지 공관·상사 등을 통해 제소배경 또는 사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출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을 바탕으로 제소 위험 품목들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 품목은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아웃리치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장하였다.

이천기·강민지¹⁴⁾는 미국·EU·일본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

12) 류한얼, “수입국의 상계관세 결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수출국의 보조 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34(1), 2021, pp.85-104.

1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통상법무정책, 2021, pp.184-195.

14) 이천기·강민지,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6), 2020, pp.1-19.

다.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개혁 논의가 WTO 내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법에 있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포괄하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하였다. WTO가 오늘날의 통상환경에 적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EU·일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은 중국의 국영기업 의존 경제모델 및 산업보조금 정책을 겨냥한 것이나, 한국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분석과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창환·고정오¹⁵⁾는 WTO 협정문과 판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적용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와 통제, 정부 기능의 수행, 공공기관의 행위 시 정부의 승인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와 통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분비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며, 의사결정 시 정부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나 간접 지원 정책을 펴면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안덕근·유지영·김민정¹⁶⁾은 WTO체제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운용상 유의해야 할 보조금조치의 특징을 유추하였다. 산업육성 정책상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중국의 보조금정책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중 양국 간 무역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치 뿐만 아니라 상계조치나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불가피하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중국 통상정책의 핵심 요소로 대두될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

15) 최창환·고정오, “WTO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상 공공기관 판단기준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 2020, 21(3), pp.35-48.

16) 안덕근·유지영·김민정,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2015, 06(123), pp.9-46.

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상계조치 활용 역량을 시급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상만¹⁷⁾은 WTO의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중미 철강분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조금협정 및 반덤핑협정의 이해를 돕고, 한국 기업 및 정부로 하여금 무역상대국의 무역규제 및 불공정무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였다. 수입에 대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덤핑마진 등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증거자료, 가격하락 또는 가격억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자료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관계 당국에서도 증거자료의 수집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요구되고 모든 국가에서 WTO 협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무역거래가 정착되어 세계 무역이 증대되길 바라고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재호·이재민¹⁸⁾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WTO에서 논의되는 협정 개정 논의, 이를 반영하고 있는 개별 FTA 협정별 차이점과 문제점, 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관련제도와 운용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운용하는 무역위원회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FTA 체제 내에서 양자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 교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도 이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무역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진¹⁹⁾은 상계조사를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의 주체로서의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와 혜택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미 간 분쟁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금번 분쟁은 중·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였

17) 김상만, “WTO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DS 414)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4, 43(0), pp.1165-1200.

18) 정재호·이재민, “정책연구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14, 214(0), pp.36-38.

19) 조영진,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2013, 10(113), pp.82-108.

나.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비시장경제 지위를 가진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조사를 하는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WTO 보조금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조사당국이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해외 시장의 가격과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사용할 때 고려하여야 되는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요소가 실제 상계조사 및 분쟁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WTO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손기윤²⁰⁾은 WTO 보조금협정의 상계관세조사규정 중에서 개선을 요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뒤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의 상계관세조사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역 무역협정 체결할 때 상계관세를 비롯한 무역구제조치의 배제가 의무적인지 여부에 대한 심도가 있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Ⅱ-1> 국내 상계관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내용	연구결과
문희은 박도연 (2022)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FA 적용패널쟁점을 기반으로 FA 적용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	FA 적용에 앞서 필요정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의무수준의 강화를 주장함
김지은 (2021)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개정내용과 베트남산 타이어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어사건의 쟁점 연구	한국정부는 선제적으로 외환 유입 내역 등을 세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AFA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전 업무와 관련된 재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면 향후 효율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류한열 (2021)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수입국의 상계관세 설정 방식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라 수입국 정부가 최적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출국 정부는

20) 손기윤, “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0, 34(2), pp.689-708.

	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수출국의 최적 보조금 전략 분석	자국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고 주장함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법무 기획과 (2021)	한국과 세계의 대외 수입 규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국가별 수입규제 동향과 수입규제조치 대응 및 분쟁해결방안을 제시	-수입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수출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을 바탕으로 제조 위험 품목들을 선별하고, 제조 위험 품목은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아웃리치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천기 강민지 (2020)	미·EU·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 전망 및 시사점 제시	WTO가 오늘날의 통상환경에 적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EU·일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은 한국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분석과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최창환, 고정오 (2020)	WTO 협정문과 판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적용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판단 기준 연구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나 간접 지원 정책을 펴면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안덕근 유지영 김민정 (2015)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중국의 보조금정책의 분석을 통해 한국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대중국 통상정책의 핵심 요소로 대두될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상계조치 활용 역량을 시급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함
김상만 (2014)	WTO의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중미 철강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 및 정부로 하여금 무역상대국의 무역규제 및 불공정무역에 대해 대처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덤핑마진 등에 대해 정확하고 적정한 증거자료, 가격하락 또는 가격억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자료 수집에 노력해야 하며, 관계 당국에서도 증거자료의 수집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요구되고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재호 이재민 (2014)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제도와 운용사례분석을 통해 운용방안을 제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조영진 (2013)	중미 분쟁을 중심으로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WTO체제에서의 쟁점 연구	WTO 보조금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손기윤 (2010)	WTO 보조금협정의 상계관세조사규정 중에서 개선을 요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뒤에 개선방안을 제시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의 상계관세조사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무역협정 체결할 때 상계관세를 비롯한 무역구제조치의 배제가 의무적인지 여부에 대한 심도가 있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자료: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외국 선행 연구 분석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周一帆²¹⁾는 미국·유럽·일본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살펴보고 WTO 협정과 비교연구하며,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조금개혁이 주로 보조금 주체범위 확대, 유해 보조금 유형 가입, 생산능력 왜곡의 불리한 영향 증가, 적절한 보조금 기준 확정, 보조금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방면에 집중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평경쟁과 무차별원칙의 전제 하에 논의되어야 하며 규칙체계와 논리관계를 합리화 조정과 함께 합법적인 기초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혁하기 때문에 국가 마다 미치는 영향을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은 직면하여 합리적인 구분, 조정과 혁신에 주의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상의 추세를 확대함으로써 보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張月姣²²⁾는 중·미 미국산 유정관등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사건(DS473)의 내용과 쟁점의 분석을 통해 중국은 이 사건에서 승소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법치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국내법치에 대해

21) 周一帆, “美歐日WTO補貼規則改革方案評析及中國應對”, 太平洋學報(07), 2022, pp.74-86.

22) 張月姣, “中國在WTO訴美國反補貼措施案中勝訴的意義及啓示”, 國際法研究(03), 2022, pp.3-16.

WTO규칙에 따라 합리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해야 하고 무역통계와 보조금통보 사업을 잘하여 보조금의 투명도를 높이며 WTO무역규칙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강화하며 국유기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국제법치에 대해 WTO분쟁을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률로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馬忠法, 孫玉山²³⁾는 미국의 “2021년 전략과 경쟁법”에 의해 반보조금 제도와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미국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조치의 추세와 이유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상계법률제도는 비교적 건전한 반면에 중국은 최근에 입법해서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수량이 부단히 증가되고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이 우세한 업종에 더욱 집중되고 상계관세조사와 반덤핑조사를 계속 대규모적으로 병행하고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줄 추세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보조정책을 제때에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국제보조금규칙의 구축을 추진하는 대응방안을 주장하였다.

王光²⁴⁾는 WTO 다자간 규정 개혁에 따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WTO다자간규칙의 발전추세와 중국 재정보조정책의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국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술 측면에서 국유기업, 개발도상국의 대우와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착안하여 재정보조정책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자간협상을 통해 정책공간을 주동적으로 창조하고 개혁심화를 통해 정책공간을 끊임없이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姜增偉, 姜春力, 增偉²⁵⁾는 미국·유럽이 각각 새로운 입법을 통해 새로운 상계관세관정규칙을 제출하는 점에서 상계관세규칙을 전통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과 해외투자분야로 연장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국가인정제한을 돌파하고 제국시장과 주최국시장으로 연장해서 기업의 해외무역투자에게 심각한

23) 馬忠法·孫玉山, “美國對華反補貼：趨勢、原因及應對策略”, 大理大學學報(03), 2022, pp.1-9.

24) 王光, “WTO改革背景下中國財政補貼政策空間分析與應對策略”, 上海對外經貿大學學報(06), 2021, pp.5-14.

25) 姜增偉·姜春力·鄭偉, “積極推進補貼機制改革,妥善應對反補貼泛化趨勢”,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中國智庫經濟觀察, 2021, pp.171-176.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상계관세제도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여 자원배치에서는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하고 정부와 국유기업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법에 의해 강화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보조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에서 중국은 다자간 보조금 규율을 준수하고,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선언하고 다자간협정의 규칙과 분쟁해결제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기업의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시하였다.

劉梓怡²⁶⁾는 무역구제이론을 개괄하고 무역구제의 법률연혁과 역사적인 유래를 연구하였으며 시사열점과 결부하여 중미 무역구제와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고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를 살펴보고 국가, 수량 및 업계의 세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관련 영향을 연구하고 중국산 조립식 철강구조제품과 타일제품 두 사례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시장 경제지위에 관한 문제, '대체국'문제, 중국에 상응한 인재가 부족한 문제에 따라 정부는 다자간무역규칙을 합리하게 이용하여 다자간무역체계를 수호하는 사명을 짊어져야 하고 사위일체(四位一體) 협력을 강화하여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기업은 혁신강도를 높이고 중국브랜드를 구축하며 산업사슬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보완전력을 제시하였다.

王萌²⁷⁾는 중국 당했던 상계관세 조사 조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상계관세 조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조금상계조사에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상태에 처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보조금의 제정을 규범화하고 특정성을 피해야 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전문 조합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마광²⁸⁾은 중국이 처음에 제소국으로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관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건의 조사 및 판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상계관세 법률과 관련 판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덤핑의 대상이 다만 기업 또는 산업내부에 국한된다

26) 劉梓怡, “美國對華的貿易救濟調查及應對策略研究”,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21. pp.1-48.

27) 王萌, “我國遭遇反補貼調查的現狀與對策”, 財政科學(10), 2019, pp.100-106.

28) 마광, “중국의 상계관세제도와 실행에 관한 연구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판정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1, 35(0), pp.405-433.

면, 상계관세는 직접 상대방 정부행위를 겨냥하다는 점에서 반덤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은 반덤핑,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 분야에서 모두 입법과 실행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중국의 기업과 산업이 국내법과 국제 상계조치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상계조치가 이미 중국에서 단순한 이론문제에서 실행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상계조치사례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상계조치조례』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Sherzod Shadikhodjaev²⁹⁾는 다자간 보조금 제도 하에서의 특별 경제구역 인센티브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반보조금 관행에 대해 논의하며, 경제활동 촉진에 있어 구역의 일방주의를 구성하는 '위험한' 및 '안전한' 유형의 지원 조치를 식별하였다. 경제특구와 관련 국가 시스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 해결책이 아니라 각종 선택을 논의함으로써 “one-size-fits-all” 대신 WTO 보조금협정과 일치한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이익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을 회피 (또는 개혁) 하고 다자간법률의 보조금조건을 잘 이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이외의 조치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Dukgeun Ahn·Jieun Lee³⁰⁾는 미국의 상계관세법이 비 시장경제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미국이 장기간 신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정책을 변경한 이후 반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의 동시징수는 이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한 무역구제행동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구제 관행의 주요 특징도 살펴보았다. WTO 상소기구는 이러한 “이중구제”는 WTO 보조금협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대한 상계관세부과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필자는 이 판정에 대해 비논리적인 관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칭찬하지만, 제19조에 대한 협상역사를 검토할 때 그 법률적 추론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9) Sherzod Shadikhodjaev,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Unilateralism of Special Economic Zon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21, 24(2), pp381 - 402.

30) Dukgeun Ahn·Jieun Lee,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1, 14(2), pp329 - 368.

Rachel Brewster·Claire Brunel·Anna Maria Mayda³¹⁾는 미국의 對중국 상계 조치에 대한 WTO 상소기구(AB)의 판정에서 상계관세(CVD) 부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서 “패전”했지만, CVD 인센티브에 사용되는 절차와 테스트의 변경은 미국이 특정 상품에 대하여 정책 수단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기하였다. 상계관세는 관세의 표준 왜곡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목표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아닌데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상계관세는 국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제품 제조업체의 압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Thomas J. Prusa·Edwin Vermulst³²⁾는 2009년 곡물 지향 전기강의 중국 철강 생산업체들은 미국과 러시아 생산업체를 상대로 반덤핑(AD) 및 반덤핑의무(CVD) 소송한 사건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다수는 중국 상무부에 대한 생산자의 중국 조사 당국 적용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 또한 중국산무부의 부상 분석의 특정 측면에 도전했다는 점이라고 제시하였다. 패널과 상소 기구는 사실상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서의 결함과 중국의 사건 처리를 감안할 때, 패널과 AB 결정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사건 운용 프로그램에서 혐의와 증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하고, 다른 국가 (미국 포함)가 가장 큰 대상 국가인 중국에 AD 및 CVD 명령을 부과했을 때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표준을 수립하기 때문에 분쟁에서 중국이 '승자'로 부상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0년 간 국내와 외국 일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대부분 선행연구는 사례분석의 연구방법으로 어떤 보조금 분쟁에 대한 깊은 분석을 진행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은 단일한 국가이며 이 국가에 대한 보조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거나, 단일한 각도에서 깊게 분석해서 더욱 상세

31) Rachel Brewster·Claire Brunel·Anna Maria Mayda,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 Review of the WTO Appellate Body’s Ruling in US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World Trade Review*, 2016, 15(2), pp327-349.

32) Thomas J. Prusa·Edwin Vermulst, “China-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exporting US AD/CVD methodologies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World Trade Review*, 2014, 13(2), pp229-266.

하게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이점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 중국, 미국 등 세 개 국가로서 WTO 보조금협정, 세 개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 조치 현황, 반보조금제도, 보조금분쟁사례의 주요 쟁점 등 다방면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험과 전략을 참고하였다는 것이다. 자국에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졌던 부분을 찾아서 관심을 갖고 보조금 제도 개선과 상계관세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표 II-2> 외국 상계관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내용	연구결과
周一帆 (2022)	미, EU, 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살펴보고 WTO 보조금협정과 비교연구하며,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공평경쟁과 무차별원칙의 전제하에 규칙체계와 논리관계를 합리화 조정하고 도전을 직면하여 합리적인 구분, 조정과 혁신에 주의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상의 추세를 확대함으로써 보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張月姣 (2022)	중미 미국산 유정관등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사건분석을 통해 중국은 이 사건에서 승소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	중국은 WTO규칙에 따라 합리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고 보조금의 투명도를 높이며 WTO 무역구제규칙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강화하며 국유기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馬忠法 孫玉山 (202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조치의 추세와 이유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전략을 제시	중국은 보조정책을 제때에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 적당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국제보조금규칙의 구축을 추진하는 대응방안을 주장함
王光 (2021)	WTO다자간 규정 개혁에 따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추세와 중국 재정보조정책의 문제점을 제시	중국은 국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국유기업, 개발도상국의 대우와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착안하여 다자간협상을 통해 정책공간을 적극적으로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p>姜增偉 姜春力 增偉 (2021)</p>	<p>대중국 상계관세 조사 조치의 주세와 중국의 보조금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연구</p>	<p>국내에서 상계관세제도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외국에서 다자간 보조금 규율을 준수하고,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선언하고 다자간협정의 규칙과 분쟁해결제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기업의 권익을 수호할 것을 제시함</p>
<p>劉梓怡 (2021)</p>	<p>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대중국 조사사건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과 대응방안을 지적</p>	<p>중국정부는 다자간무역규칙을 합리하게 이용하여 사위일체(四位一體) 협력을 강화하여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 기업은 혁신강도를 높이고 중국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완전력을 제시함</p>
<p>王萌 (2019)</p>	<p>중국 상계관세 조사 조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상계관세 조사의 대응방안연구</p>	<p>중국정부는 보조금의 제정을 규범화하고 특정성을 피해야 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응소하며 전문 조합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p>
<p>마광 (2011)</p>	<p>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판정을 중심으로 국의 상계관세제도와 실행에 관한 연구</p>	<p>중국의 기업과 산업이 국내법과 국제상계조치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계조치사례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상계조치조례』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을 제시함</p>
<p>Sherzod Shadikhodjaev</p>	<p>WTO 보조금협정 및 특별 경제구역의 일방주의에 관한 연구</p>	<p>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을 회피 (또는 개혁) 하고 다자간법률의 보조금조건을 잘 이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이외의 조치 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p>
<p>Dukgeun Ahn Jieun Lee</p>	<p>미국 對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건 및 현황에 관한 연구</p>	<p>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對중국 “이중구제”는 “적정한 수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칙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에 대해 비논리적인 관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추론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
<p>Rachel Brewster Claire Brunel Anna Maria</p>	<p>환경상품 무역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상계조치 판정에 관한 검토</p>	<p>상계관세는 관세의 표준 왜곡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목표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p>

Mayda		식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상계관세는 국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제품 제조업체의 압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Thomas J. Prusa Edwin Vermulst	중미 곡물편강에 대한 반보조금 및 반덤핑 분쟁 해결방안의 검토를 통한 미국 AD/CVD 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포함된 국가들이 중국에 AD 및 CVD 명령을 부과했을 때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표준을 수립하기 때문에 분쟁에서 중국이 '승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Ⅲ. 한·중 상계관세 조치 현황 및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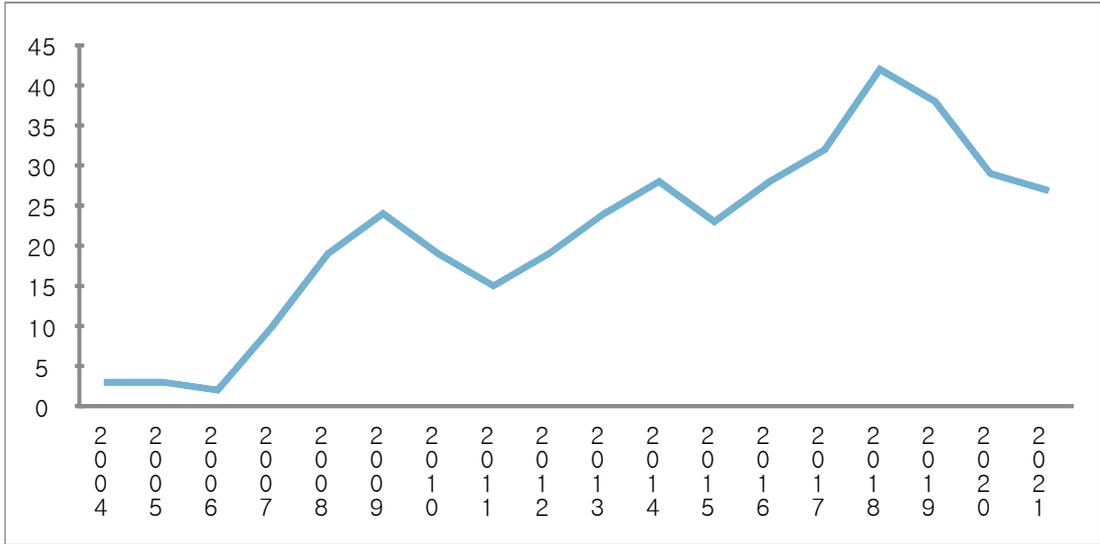
1. 중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1) 중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중국은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대외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민경제가 강한 성장세로 나타난 동시에 무역 마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WTO에 가입한 2001년과 2021년 사이에 중국에 대하여 총 1931건의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반덤핑분쟁은 1316건으로 68.15%를 차지했으며, 반보조금분쟁은 196건으로 10.15%에 달했다.³³⁾ 특히 최근 대량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의 합동조사가 발기되었는데, 그 빈도가 높고, 관련된 제품의 범위가 넓으며, 영향이 깊은 것은 세계 무역구제 역사상 보기도 흔하지 않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많은 분쟁에서 경험을 쌓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반덤핑 분쟁을 대응하는 국제환경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반보조금 분쟁을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3)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2022년 9월 16일 기준

<표Ⅲ-1>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사건 추세 (2004년-2021년)



자료: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표Ⅲ-2> 경제발전 수준별 상계관세 조사 제소국과 피소국 순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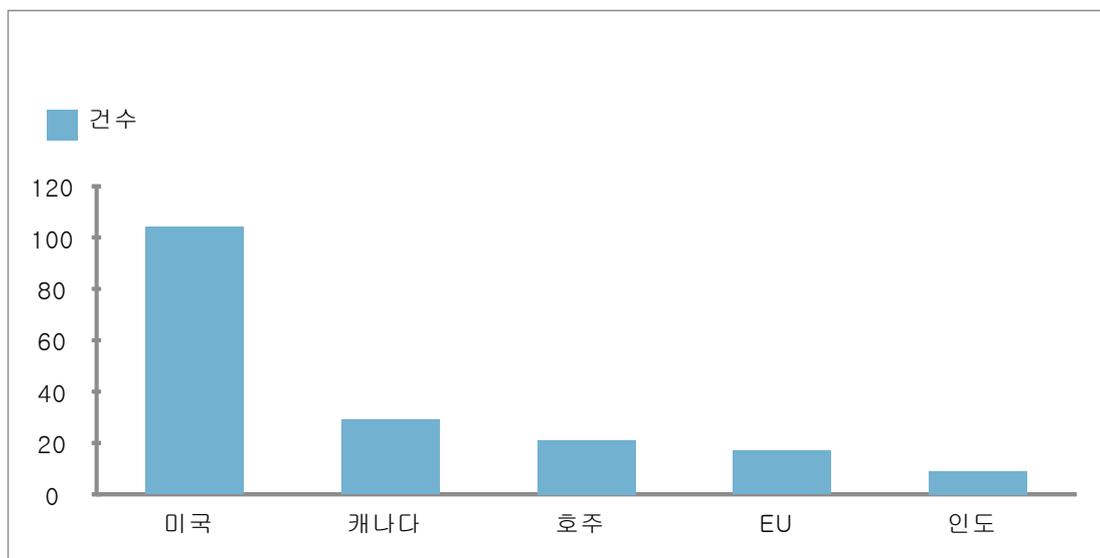
1995년-2021년		1위	2위	3위	4위	5위
제소국	선진국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01	91	74	40	9
	개도국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29	17	14	13	12
피소국	선진국	EU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타이완
		49	33	23	14	10
	개도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196	95	30	26	23

자료: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http://www.wto.org>).

한편, 세계적으로 상계관세 조사 사건을 살펴보면 주요 제소국은 선진국³⁴⁾들이며 1995년과 2021년 사이에 선진국의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총 517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82.8%에 달한 반면에 주요 피소국은 개발도상국들이며 1995년과 2021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상계관세 피조사 건수는 총 481건으로 전체 피조사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표Ⅲ-2에 나타나듯이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은 196건의 상계관세 피조사 건수로 가장 많은 상계관세 피조사 대상의 1위가 되었다.

표Ⅲ-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한 국가도 대부분 선진국인데 가장 많이 발동한 국가는 미국으로 104건을 개시하여, 그다음으로 캐나다 29건, 호주 21건, EU 17건, 인도 9건으로 손으로 나타났다.

<표Ⅲ-3>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발동 국가 및 건수(2004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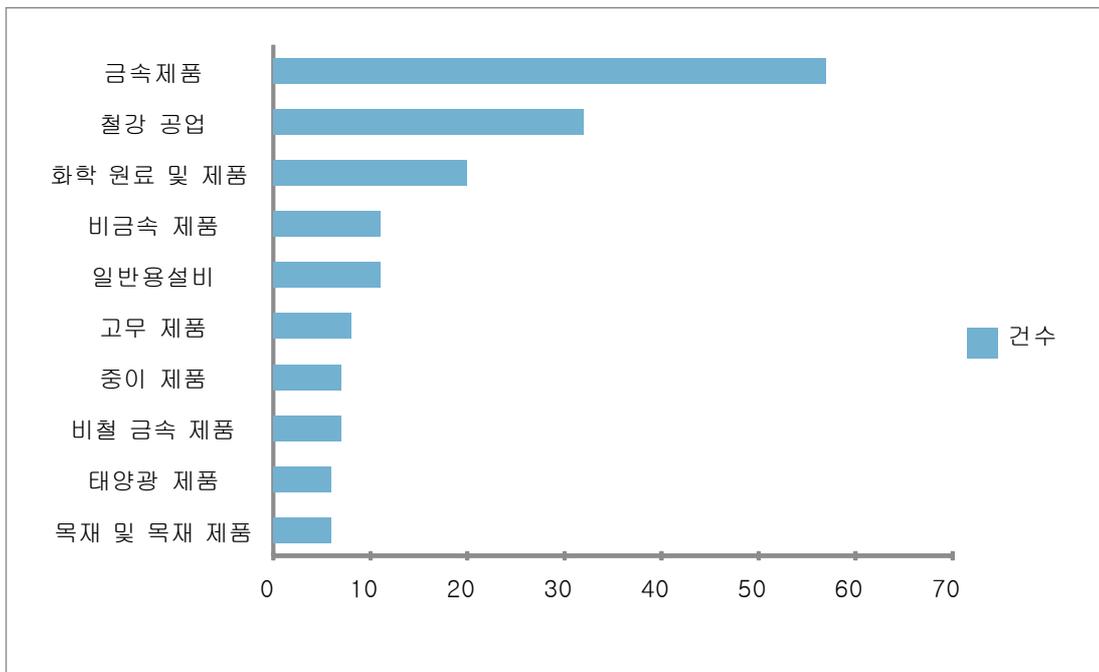
자료: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중국에 대하여 실시된 상계관세 조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Ⅲ-4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상계관세 조사 대상은 금속제품이 57건으로 29%를 차지하여 철강공업이 32건으로 16%로 드러나고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이 20건으로 10%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에는 경공업제조 분야에서만 상계조치를 취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경공업제조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및 첨단제조업이 상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 EU은 중국산 자동차데이터처리

34) 본 논문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의 분류를 사용했다.

설비의 부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처음으로 중국의 첨단기술제품에 대해 시작한 상계관세 조사이다. 2011년에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종이와 판지 및 제품, 방직 원료와 방직 제품, 목재와 목제품도 포함하여 관련업종의 범위가 넓고 노동집약형기업으로부터 자본집약형기업까지 경공업제품부터 첨단과학기술제품까지 모두 조사대상이 되었다.³⁵⁾

<표Ⅲ-4> 중국에 대한 품목별 상계관세 조사 건수(2004년-2021년)



자료: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또한 중국에 대하여 부과한 상계관세 세율이 높은 것도 중국 상계관세 현황의 한 특징이다. 부과된 상계관세는 증가로 부과한 96건 중에 상계관세 최고세율이 50%이하의 경우가 44건, 50%~100%인 경우가 12건, 100%~150%인 경우가 12건, 100%~200%인 경우가 14건이 있고, 세율이 200%가 넘는 건수가 14건이다.³⁶⁾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협조하지 않은 중국 기업에 대해 이전의 어떤 제심 또는 재정을 적용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미국 상무부는 예날 사례에서 최고 세율을

35) 馬忠法·孫玉山, “美國對華反補貼：趨勢、原因及應對策略”, 大理大學學報(03), 2022, p.3.

36)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적용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이 늘고 있는 이른바 최고 세율도 동태적으로 바뀌고 끊임없이 갱신되고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실제로, 사건의 예심판정 후부터 최종심판정 전까지 새로운 사건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최종심판의 부과세율이 예심판정의 세율보다 훨씬 높게 된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은 모방반응이 나타났다. 즉, 한 상품이 한 나라에서 상계관세조사 대상으로 조사시작한 후에 이어서 재빨리 다른 나라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이유로 재차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하는 것이다.³⁷⁾ 미국은 중국산 아질산나트륨 제품에 대해 불리한 사실로 관련 항목이 상계조치를 조치가능보조금을 구성한다고 최종판정을 내린 후, 인도는 거의 유사한 제조 항목으로 중국 아질산나트륨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제소를 뒤따랐다. 중국산 스테인리스 수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중국산 판지, 타이어,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거의 동시에 3개국이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했다. 이러한 조사의 혐의항목은 서로 유사하며 제소국가에게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효율성이 높은 반면에 피소국의 경우는 응소 비용이 엄청나고 비록 같거나 유사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국정이 다르고 법률제도와 산업구조가 서로 달라서 응소전략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건은 부과 기간이 지나면 재조사를 받고 일몰 심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보유량을 늘려 세금을 유지하여 부담은 더 커진다. 일단 어떤 나라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면 관련 기업은 대량의 응소 작업을 해야 하고, 정보 수집, 설문지 조사와 변호사 선임 등 높은 응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은 상품의 원가를 구성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리한 현황에서 중국은 보조금에 대한 내부적인 개혁과 외부적인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2) 중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WTO가입에 대비하여, 1994년 중국은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을 제정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질서”라는 장을 두고 상계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WTO 가입 후 새로운 상황 과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2004년 3월 31일 『반보조

37) 張月姣, “中國在WTO訴美國反補貼措施案中勝訴的意義及啓示”, 國際法研究(03), 2022, p.6.

금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 후의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보조금조례』를 더욱 규범화 시키고, 그 시행을 돕기 위하여 『반보조금조사개시잠정시행규칙』(反補貼調查立案暫行規則), 『반보조금조사공청회잠정시행규정』(反補貼調查聽證會暫行規則), 『반보조금설문조사잠정시행규정』(反補貼問卷調查暫行規則), 『반보조금조사현장조사잠정시행규정』(反補貼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및 『반보조금산업피해조사규정』(反補貼産業損害調查規定), 『산업피해조사공청회규정』(産業損害調查聽證規則), 『산업피해조사공개정보열람방법』(産業損害調查公開信息査閱辦法), 『산업피해조사정보열람과 정보공개규정』(産業損害調查信息査閱與信息披露規定)이 포함된 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에서 『상계관세행정사건심리중법률적용일부문제에 대한 규정』(關於審理反補貼行政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을 공포함으로써, 『반보조금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상계관세 입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 『반보조금조례』는 총칙, 보조금과 피해, 반보조금조사, 상계조치, 상계관세와 약속의 기한 및 재심사, 부칙 총 여섯 장이 구성되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분류, 피해의 정의, 심사사항, 피해액의 누적평가, 상계관세 조사절차, 상계조치 및 행정재심사 등내용이 포함되며 모두 기존 법령에 바탕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관련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규범을 적용한다. 그리고 조례는 조사과정에 관련된 협상, 통지, 공고와 분쟁해결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규정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 관련내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책임기관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조사의 책임기관은 상무부이며, 산업피해조사에 관하여 농산물에 관련된 사건을 상무부와 농업부가 합작 진행한다. 상계관세의 징수결과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세관이 다고 규정하였다. 반보조금조례의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다.

가. 특정성

수입상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이에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보조금조사를 진행하며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³⁸⁾

보조금에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반보조금 조치를 채택하며 특정성을 지녀야 한다.

38)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조.

아래의 5가지 사항 중에 해당될 경우 특정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³⁹⁾ 수출국(지역) 정부는 명확하게 지정한 일부 기업, 산업의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 수출국(지역) 정부는 법률, 법규에서 명시된 일부 기업, 산업만이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 지정된 특정구역 내에 기업, 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는 본 조례에 있는 수출 보조금 명세서에 열거한 각항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 자국(지역)상품으로 수입상품의 사용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이다.

특정성을 확정할 때 보조금을 취득한 기업의 수량과 기업이 수납한 금액, 비율, 시간 및 보조금을 주는 방식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나. 보조금의 산정

수입상품의 보조금액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⁴⁰⁾ 대가 없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수령한 금액의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대출금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대출금을 받는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대출 조건 하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동 대출의 이자차액을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대출담보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실제 지불한 금리차를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주식참여의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로 수령한 자본금액은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동 물품 혹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시장가격과 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물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실질적인 지급가격이 물품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차액은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응답 단아야 할 수익을 포기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응답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 차이를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위에서 열거된 방식을 제외한 기타 보조금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을 확정한다.

다. 보조금에 대한 심사사항

39)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4조.

40)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6조.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을 인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인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의 수량 및 절대적인 수량,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 소비에 해당하는 수량의 대량 증가하는지, 또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의 대량증가의 가능성이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의 가격, 가격인하, 또는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대폭적인 제한, 가격인하 등 영향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경제 지표 및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의 생산능력 및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현황을 포함한다. 국내산업의 손해를 초래한 기타요소이다.

실질손해위험의 확정은 사실에 의하여 추측이나 매우 낮은 가능성에 의하면 안 된다.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인정할 때에는 긍정적인 증거에 의해야 하고 비 보조요소로 끼친 피해를 보조금으로 인해 주는 것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조금수입제품을 2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출했고, 또한 동시에 각국가(지역)의 보조금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량의 보조금이 아니고 그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그리고 보조금수입제품 간의 경쟁조건 및 보조금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수 있다.⁴¹⁾

앞에서 말하는 미량보조금이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보다 낮은 보조금을 말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지역)에서 수출한 보조금수입상품의 미량보조금은 보조한 보조금액이 상품가치의 2%보다 낮은 보조금을 말한다.

라. 반보조금조사

반보조금조사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신청을 하여 국내 산업 혹은 국내산업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은 반보조금조례에 따라 상무부에 서면방식으로 반보조금 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⁴²⁾

그 다음에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60일 안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한자가 신청을 제출한 것인지, 신청서 내용 및 증거 등에 대하여

41)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9조.

42)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13조.

심사를 실시하며 입안 조사하는지 결정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사기한에 대하여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다. 입안 조사하기 전에 관련 보조금사항 및 관련한 피조사 가능한 상품의 국가(지역)의 정부에 협상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⁴³⁾ 그리고 신청반대 또는 신청지지를 표시한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국내산업 또는 그 국내산업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반보조금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반면에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물품의 총생산량의 25%미만인 경우, 반보조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다.⁴⁴⁾

조사의 결정은 상무부에서 공고하며, 신청인, 이미 파악한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 및 수출국(지역)의 정부에 통보한다. 입안 조사의 결정을 공포한 후 상무부는 신청서원본을 이미 파악한 수출경영자 및 수출국(지역)의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⁴⁵⁾

상무부는 설문조사, 공청회, 표본추출, 현장조사, 기술검증 등 조사방법으로 이해당사자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국(지역)의 정부에 의견진술 및 논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인원을 관련국가(지역)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국(지역)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⁴⁶⁾

그리고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할 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의 정부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의 정부가 실제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심각한 방해로 초래하는 경우 상무부는 획득 가능한 사실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⁴⁷⁾

반보조금 조사기간에 상품 조사된 국가(지역)의 정부에 계속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상은 상무부가 반보조금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실시와 반보조금조치를 취하는 데를 방해하지 않는다.⁴⁸⁾ 상무부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 피해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초의 판정을 내리고 공고한다.

43)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16조.

44)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18조.

45)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19조.

46)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0조.

47)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1조.

48)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4조.

최초의 판정은 보조금, 피해, 및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보조 및 보조금액, 손해 및 손해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공고해야 한다. 최종판정을 공고하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판정에 증거가 되는 기본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국(지역)의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⁴⁹⁾ 반보조금조사는 조사결정을 공고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 연장 가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⁵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존재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하고 공고해야 한다.⁵¹⁾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보조금, 피해의 존재 또는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미량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수입제품의 실제 혹은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손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관련 국가(지역)의 정부와 협상을 보았으며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 실시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한 개 국가 또는 부분 조사로부터 수입한 조사대상상품이 앞항에 열거된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응당 종료해야 한다.

마. 반보조금조치

최초판정이 보조가 성립되고 이에 의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확정하는 경우, 임시 반보조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보조금조치는 현금보증금 또는 담보서의 형식으로 담보하여 임시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⁵²⁾ 그리고 임시 반보조금조치의 진행은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건의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가 규정한 시행일로부터 집행한다.⁵³⁾ 또한 임시 반보조금조치를 실시기한은 임시 반보조금조치 결정공고에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반보조금 입안조사 결정하며 공고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임시 반보조금조치를 취하면 아니 된다.⁵⁴⁾

반보조금조사 기간에 수출국(지역)의 정부가 보조의 취소, 제한하거나 기타 관련조치

49)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5,26조.

50)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7조.

51)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8조.

52)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29조.

53)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0조.

54)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1조.

의 약속을 하거나 수출업자가 가격변경의 약속을 할 경우, 상무부는 이를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게 가격약속 관련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약속하면 안 된다.⁵⁵⁾

그리고 수출업자, 수출국(지역)의 정부가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반보조금 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보조금수입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는 피해의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확정할 수 있다.⁵⁶⁾

또한 상무부가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약속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보조금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고 임시 반보조금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보조금조사의 중지 혹은 종료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한다. 상무부는 승낙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상관수출업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무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로 인해 끼친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최초의 판정을 내리기 전에 약속을 청구하거나 약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출업자가 약속을 한 상황에서 수출국(지역)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무부는 약속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⁵⁷⁾

한편, 조사를 중지 혹은 종결한 후 상무부는 수출국(지역)정부의 청구에 의거해 보조금과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진행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해 보조금 또는 피해에 대해 부정적인 판정을 날 경우 약속은 자동적인 실효되고 보조금과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판정을 날 경우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다.⁵⁸⁾

그리고 상무부는 약속을 받은 후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 정기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관련 상황, 자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⁵⁹⁾

약속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반보조금조례에 따라 즉시 반보조금조사의 회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최상의 정보에 의하여 임시반보조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보조금조치 시행하기 전에 90일 내에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소급

55)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2조.
56)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3조.
57)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4조.
58)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5조.
59)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6조.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약속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된 상품은 제외한다.⁶⁰⁾

협상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판정이 보조금이 이정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끼친 확정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상계관세의 정수는 반드시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⁶¹⁾

그리고 반보조금 관세의 부과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에서 공고하며,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시행일로부터 집행한다.⁶²⁾ 또한 상계관세는 최종 판정공고일후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하지만 반보조금조례 중에 제37조, 제44조, 제45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⁶³⁾

상계관세의 납세인은 보조금수입제품의 수입업자이다. 상계관세는 다른 수출업자에 다른 보조금액에 의해 개별적으로 확정한다. 사실상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업자의 보조금수입제품에 대해 상계관세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적용할 상계관세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계관세의 세액은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⁶⁴⁾

상계관세의 징수기한과 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상계관세 장수의 종료하면 보조금과 피해의 계속 혹은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할 경우, 상계관세의 징수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⁶⁵⁾

상계관세가 효력이 발생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또는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응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상응한 증거에 대해 제심을 진행한 후 지속적으로 상계관세의 징수필요성에 대해 제심을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는 반보조금조례의 반보조금조사의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재심기간은 재심시작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⁶⁶⁾

60)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7조.

61)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8조.

62)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39조.

63)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40조.

64)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41~43조.

65)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47조.

66) 중국 『반보조금조례』 제4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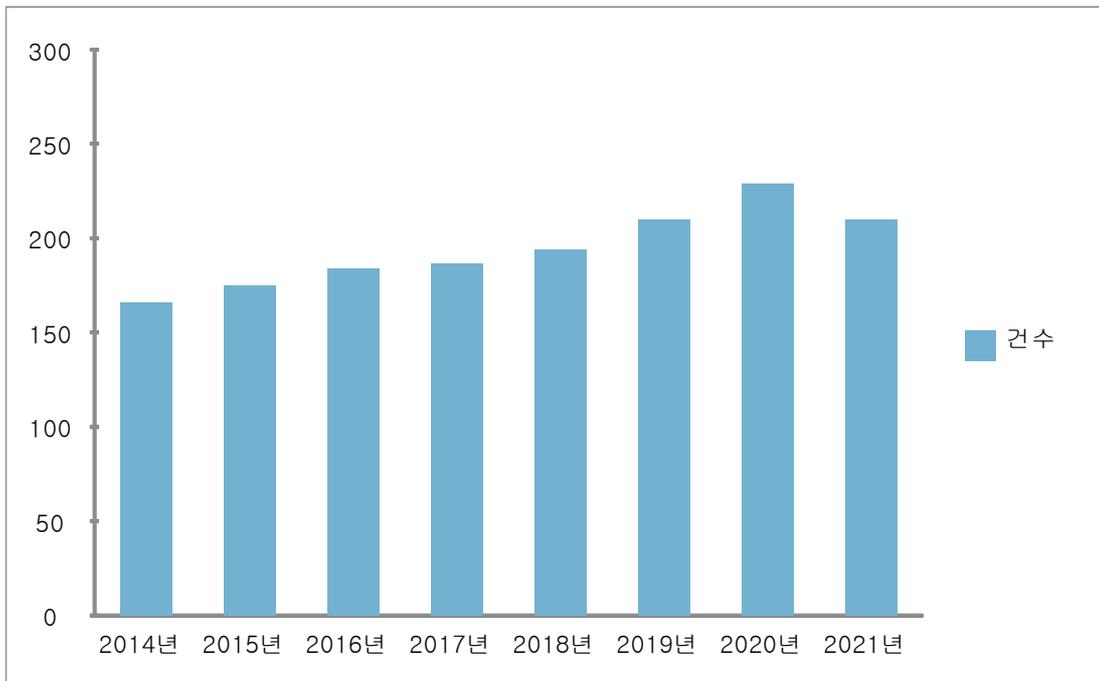
2. 한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1) 한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198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 대하여 총 609건의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반덤핑분쟁은 375건으로 61.6%를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는 213건으로 35%를 차지했으며 상계관세분쟁은 21건으로 3.4%에 달했다.⁶⁷⁾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⁶⁸⁾

<표Ⅲ-5>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사건 추세(2014년-2021년)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s://antidumping.kita.net>).

표Ⅲ-2와 표Ⅲ-6에 참조하여 상기 시간 중에 한국은 제소국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받

67)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s://antidumping.kita.net>)

68)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동한 적이 없지만 상계관세 피소건수는 33건으로 세계 3위의 피소국이 되었다. 한국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으로 EU, 캐나다, 일본, 인도가 손으로 나타났다.

<표Ⅲ-6>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유형별 현황 상위5위(2021년까지)

(단위: 건)

순위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총계
1	미국	36	2	9	47
2	터키	13	6	0	19
3	인도	14	3	0	17
4	캐나다	13	0	1	14
5	중국	14	0	0	14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표Ⅲ-7> 한국에 대한 산업별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건수(1986년-2021년)

(단위: 건)

산업	상계관세 조사	상계관세 조치
금속 및 금속제품	13	11
기계류 및 전자장비	6	4
플라스틱, 고무	1	0
종이, 판지 및 종이제품	1	0
계	21	15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s://antidumping.kita.net>).

최근 세계적인 신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추세가 있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치 건수는 2017년 누적 7건에서 2021년까지 규제중인 상계관세 조치가 미국이 8건, 캐나다가 1건, 총 9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늘었다.⁶⁹⁾ 최근에는 조사대상 품목, 프로그램, 기업 등 조사 범위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인도도 한국에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을 나타냈다.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사건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Ⅲ-7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상계관세 조사 대상은 가장 많이 나타난 금속 및 금속제품이 1위이고 기계류 및 전자장비, 플라스틱 및 고무, 종이제품이 그 뒤를 손으로 이었다. 현재 규제중인 상계관세 조치 중에서 미국은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 대형구경강판, 탄소합금후판, 도금강판, 철강후판, 냉간압연강판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며 캐나다는 냉연강재에 대한 상계관세를 조치중이다.⁷⁰⁾ 얼마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서명했으며 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이 법을 시행하면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 한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가.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 및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⁷¹⁾

69)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70)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s://antidumping.kita.net>).

71) 한국 『관세법』 제57조.

나.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⁷²⁾

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혹은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혹은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가 잠정상계관세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 세액이 잠정상계관세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⁷³⁾

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72) 한국 『관세법』 제58조.

73) 한국 『관세법』 제59조.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⁷⁴⁾

마.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⁷⁵⁾

바.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74) 한국 『관세법』 제60조.

75) 한국 『관세법』 제61조.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⁷⁶⁾

3.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관련 규정

1)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

WTO 출범한 후 2021년까지 미국은 총 1596건 무역 분쟁을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피소국가로 392건의 분쟁을 당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하여 1204건의 국제무역규제사건을 발동했으며 전 세계에서 제소국의 1위가 되었다. 상기 기간 내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는 총 342건이 있었으며, 반덤핑은 183건, 상계관세는 104건, 세이프가드 55건으로 나타나고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대 제소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이 발동한 수입규제 조사는 총 88건이 있었으며 반덤핑은 66건, 상계관세는 21건, 세이프가드는 1건)이며, 이처럼 한국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소한 나라도 미국이다.⁷⁷⁾

<표Ⅲ-8> 미국이 한중 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 건수(1995년-2021년)

(단위: 건)

규제 대상국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중국	183	104	55	342
한국	66	21	1	88

자료: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

또한 미국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혐의가 301건 제기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국가이다. 2021년까지 미국은 중국의 철강, 금속제품, 화학제품, 설비 등 여러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72건 상계관세 조치를 규제중 이고 한국의 8개 철강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개 철강 품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⁷⁸⁾

76) 한국 『관세법』 제62조.

77)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

한편, 최근 미국은 옛날에 수입규제 조사에서 사용한 정형화된 조사 기법과 달리 창의적인 조사 방법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과 반보조금협정에 있는 문구 중 흔히 활용되지 않는 조항을 다시 해석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적 접근법을 취해서 자국의 WTO 및 FTA 국내 이행 법안에 대해 재량권을 늘리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와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국의 시장이 특정 상황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정상가격을 정한다. 2015년 무역특혜확대법(TPEA)이 통과되면서 관세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에 별도의 정의 없이 단어로만 존재하는 특정시장상황(PMS)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을 통해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반덤핑 조사 및 반보조금조사에서 적용하였다.⁷⁹⁾

2) 미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미국 『1930년관세법』 제7절 (Tariff Act of 1930, title vii)은 미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기초적인 입법이다. 이외에 미국 상무부는 관할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 전문적인 규정을 제정, 즉 연방 법규 총집의 제351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례』이다. 2020년에 미국 정부는 통화저평가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상무부 법률을 확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최초로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산 타이어 및 중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한 통화저평가 여부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했다. 예비판정에 따라 베트남 동화 환율이 4.7%, 중국 위안화 환율이 5% 정도 저평가되었다고 밝히고 상계관세율을 산정할 때 통화저평가 요인을 포함시켰다.⁸⁰⁾ 이러한 환율상계관세 사건은 보조금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상 이해관계의 특수성과 존재 여부에 여전히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상계관세조사의 강도와 기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수출규모가 작은 품목 및 중소기업의 생산품

78)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

79) Pub. L. NO. 114-27, “SEC. 502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SEC,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80) 김지은,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12(2), 2021, p.105.109.

목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반보조금조사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가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제소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접수되지만, 제소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상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여 제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와 판단하는 규제위원회이다. 즉, ITC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여부의 조사, 판정, 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무역과 관세에 관련 연구 및 수입수준에 대하여 감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1930년관세법』 제7절과 연방 법규 총집의 제351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례』에 참조하여 상계관세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소 및 조사개시 결정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제소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소의 적격성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제소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제소를 제기했는지, ② 적절한 이해관계자가 제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소자는 동종상품의 제조업체, 생산자 또는 유통업체, 상업 조직으로 규정되어있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수출국의 피소 기업은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제소자가 전체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찬정한 것을 고소인이 신청서에서 입증하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지도가 50% 이상일 경우도 그 대표성을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나. ITC의 피해 예비판정

상무부가 제소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ITC는 이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5일 이내에⁵⁷⁾당시의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해 미국 내 산업이 해당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나 피해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지연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해 판정하여야 한다. ITC의 피해 예비판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순히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징후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예비판정 단계에서는 상반된 증거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상무부의 예비 보조금 판정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이후 65일 이내에 해당물품에 대해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무성은 조사가 복잡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예비판정 기한 25일 전에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조사기간을 6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상계관세 건에서 상무부의 보조금에 대한 질의서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주체인 수출국 정부에도 보내지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질의서를 통해 제출된 자료는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 BIA)로 대체되어 오히려 수출국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⁸¹⁾

라. 조사정지 협정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수출국 정부 또는 해당제품의 거의 모든 수출을 차지하는 수출업체와 당해보조금을 철폐하든지 순 보조금액을 온전 상쇄하든지 또는 해당제품의 대미수출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해당수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조사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무부는 이 조사정지가 공익에 합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때에만 조사정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상무부의 최종판정

상무부의 보조금에 대한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진행되어 예비판정 후 75일(제조 후 160일) 이내에 내려진다. 상무부의 최종판정에는 수출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문제 및 이에 대한 상무성의 검토 결과 그리고 해당업체 또는 특별한 경우 해당 수출국가에 대한 보조금 마진의 가중 평균치가 포함된다. 상무부가 최종판정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관세청산 정지명령이 계속되며 부정판정이 난 경우에는 관세청산 정지명령을 종료시키고 현금예치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상무부는 최종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81) 미국 『관세법』 19U.S.C.§1671(C).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사전요 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청회에서는 사전요약서에 언급된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바. ITC의 최종판정

ITC는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에는 동 예비판정 후 120일 또는 상무부의 보조금에 대한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에 실질적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며, 만약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상무부의 판정 후 75일 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ITC의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시와 같은 단순히 '합리적인 징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피해, 피해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지연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입각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TC에서도 최종판정을 위한 투표 30일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며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전후하여 이해관계자는 사전 및 사후요약서를 제출한다. 조사일정상 ITC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무성의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이 결과는 ITC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무성의 최종판정에서 제외된 수출업체와 수입액 등은 판정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ITC의 최종판정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관세청산 정지명령이 해제되고 예치된 현금, 보증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은 즉시 반환된다. 그러나 최종판정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그 판정근거가 현존하는 실질적 피해일 경우에 한해 관세청산이 정지된 모든 물품이 확정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반면 그 판정근거가 실질적 피해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일 경우에는 동 최종판정 이전에 부과되었던 추정 상계관세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보증, 또는 기타 담보의 예치는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사. 상계관세 징수 및 행정재심

ITC의 최종판정 이후 그 결과가 7일 내에 상무성에 통보되면 상무부는 연방관보에 상계관세 명령을 내리고 이후 해당물품의 반입시 추정 상계관세금액 만큼의 현금이 예치된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명령 또는 조사정지 협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년마다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액 또는 정지협정의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한다. 상무부는 재심을 할 경우 명령공고 1주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45일 이내에 예비 재심판정을 해야 하며 이로부터 120일 내에 최종 재심판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무성은 동 재심사 결정한 보조금 마진에 따라 재심기간인 지난 1

년간의 최종 상계관세를 정산하는 한편 동 마진에 따라 다음 재심기간인 이후 1년간의 현금 등의 예치를 명령한다.

이해관계자는 상무성 또는 ITC에 대해 상계관세 명령 혹은 정지협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무성은 해당수출국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보조금 계획을 철폐하여 해당제품의 보조금이 제거되었거나 향후 보조금 계획을 재도입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명령을 철폐하여야 한다.⁸²⁾

아. 사법적 재심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는 상무성 또는 ITC가 내린 최종판정의 사실 판단 또는 법적 결론에 대해 미국의 국제무역재판소에 사법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무성의 조사불개시 결정, 조사정지 결정, 행정적 재심과 ITC의 사정변경에 따른 판정결과 및 소멸조항에 따른 판정결과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나 ITC의 판단은 상무성 또는 ITC의 판정이 실질적 증거에 기초했는지 여부와 법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 밖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에 의해 설치된 양국 간 패널에 제소할 수 있다.⁸³⁾

자. 상계관세 명령의 우회방지

WTO 보조금협정상 우회방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국내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미국 국내법상의 우회방지 규정은 상계관세 부과대상 제품과 동종 제품이 상계관세 부과대상 수출국으로부터 최종제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최소 또는 미소한 조립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 동 부품 또는 제3국에서 조립된 제품의 대미 반수입시 해당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미국내법에는 상기 최소 또는 미소한 조립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이 없다.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해당 동종제품의 형태 또는 의향을 일부 변경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계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나온 대상물품의 신개발품에 대해서도 신개발품이 동일한 일반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 구매의 기대가

82) 이정희, “WTO 및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p.28.

83) NAFTA협정 Annex1901.2.

같고, 궁극적인 용도가 같으며, 신개발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전시될 경우에는 대상물품과 동일한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체계는 상무성과 ITC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소에 관한 적격성 여부는 상무성이, 피해에 관한 판정은 ITC가 담당 한다. 미국 관세법에는 WTO 보조금협정상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우회방지규정 등이 있으며 보조금·상계관세제도를 준수법적으로 운용하여 통상현안의 협상 카드로 무역제재를 행사하고 있다. 실로 미국은 수입물량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활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강한 국내산업 보호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최대의 제소국이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WTO 보조금협정은 양자 간 구제절차 발동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추후 그러한 구제절차의 원인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소기업의 피해를 배상과 보상의 차원에서 전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협정상의 구제절차가 제재국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계관세 부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IV. 한·미 및 중·미의 보조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1. 중·미 태양광 전지제품 보조금 분쟁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2010년대 유럽의 채무위기의 경향을 미쳐서 세계 천정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특히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급불균형, 이익 감소에 따라 업체들이 경영하기 힘들고 대거 도산한 국면이 나타났다. 2011년8월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 개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Evergreensolar, SpectraWatt 및 Solyndra가 한 달 안에 순으로 파산하였으며 약 1600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⁸⁴⁾ 미국 하원의 에너지 및 상무위원장 Henry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지도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공언하였다. 세 회사의 파산성명에서 모두 파산의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

84) 毛麗佳, “光伏產業遭遇反傾銷的原因及對策分析”, 中外企業家, 11(1), 2015, p.3.

감소와 과도한 경쟁이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 업체와의 경쟁 탓으로 돌렸다.

2011년 10월 19일 미국에서 있는 태양전지 최대 생산기업인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는 중국 태양전지생산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런 혜택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이루어졌으며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 내수시장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고 미국 상무부에서 소송을 제시하였다.⁸⁵⁾

이에 대하여 2011년 11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사건 관련 중국산 태양전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결정체 실리콘 태양광 전지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산업 손해 예비판정을 공시하였다, 6명 위원 만장일치 투표는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미국 국내 태양광시장은 중국산 결정체 실리콘 태양광 전지제품을 수입으로 인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미국 상무부는 계속 관련 상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2012년 3월에 관련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당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결정체 실리콘 태양광전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의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⁸⁶⁾

<표IV-1>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최종판정

부과 대상자 (중국 태양광전지생산업체)	상계관세율
Wuxi Suntech Power Co.,Ltd. Luoyang Suntech Power Co.,Ltd. Suzhou Kuttler Automation Systems Co.,Ltd. Shenzhen Suntech Power Co.,Ltd. Wuxi University Science Park International Incubator Co.,Ltd. Yangzhou Suntech Power Co.,Ltd.	14.78%

85)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86)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Zhenjiang Rietech New Energy Science & Technology Co.,Ltd.	
Changzhou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Co.,Ltd.	15.97%
기타	15.24%

자료: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2012년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국산 결정체 실리콘 태양광 전지의 덤핑행위와 보조금행위가 미국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했으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산업 피해 최종판정을 발표하였다. 이 판정에 근거하여 미국 상무부는 안전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과세 징수 명령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어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미국 상무부는 관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유지 여부 여러 차례 연례재심을 진행했으며 2017년 11월 제1차 반덤핑 및 반보조금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관련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및 반보조금 일몰재심 산업 피해 입안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가설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를 철폐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상품의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손해가 계속 또는 재 발생할 가능성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2018년 3월 미국 상무부는 만약에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의 현행 상계조치를 취소할 경우 관련 제품의 수입은 18.2%~19.41%정도의 보조금 계속 또는 재발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상계조치 계속 부과한다는 제1차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을 내렸다. 2019년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에 대한 현행 반덤핑 및 상계조치가 계속 유효하다고 표결하였으며 제1차 상계관세 일몰재심 사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렸다.⁸⁷⁾

87)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표IV-2> 중·미 태양광 전지 보조금 분쟁 주요 경과

개요	일시	개요
상계 관세 부과	2011년 10월	SolarWorld Industries미국 지사 중국산 태양광 전지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 제시
	2011년 11월	미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 반보조금 입안조사 개시
	2011년 1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예비판정
	2012년 3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2012년 10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2012년 11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일물 재심	2017년 11월	상계관세 유지 여부 1차 일물재심 개시
	2018년 3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계속 부과 최종판정
	2019년 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 유지 최종판정
	2021년 2월	미 상무부의 연례재심 개시

자료: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공개 자료에 참조(<http://cacs.mofcom.gov.cn/>)

2) 분쟁의 주요 쟁점

가.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국내 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국내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 1930년 관세법 (개정안)> 제771조 제4항 (a)에 따르면 동종제품은 국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로 다르지만 특징과 용도가 유사한 제품이 말한다. 국내산업은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이 말한다. 본 사건에서 중·미 상방은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의 범위에 대한 서로 상의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제품이 피조사 대상 제품의 동종제품인데 박막 태양광 제품이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두 가지 제품의 생산원자재, 생산 설비, 제조 공정이 다르고 이외에도 이들의 화학 성분, 무게, 크기,

전환 효율, 내부 성능 등의 차이가 존재해서 두 가지 제품 간에 경쟁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각이한 제품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중국 측에서는 동종제품에 대한 박막 태양광 제품이 포함된 태양광 전지 제품이라고 판단하였다.⁸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신제품의 기술 갭이 빠르니까 제품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소비자가 두 상품을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동종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입자가 박막 태양광 제품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제품 간에 높은 경쟁성 및 대체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종제품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국내 생산자로 규정한다. <1930년 관세법 (개정안)>제1677조 제4항 (b)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자가 당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당해 상품의 국내생산자가 수입자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기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본 사건에서 국제무역위원회는 California Suntech Power회사는 사건관련 상품의 수입자이고 중국 Suntech Power회사의 미국자회사라고 인정하였으며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해서 Suntech Power제외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와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미국 업체들이 국내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나. 실질적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국내 산업이 조사대상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또는 실질적 손해의 위협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상품의 수입 수량, 수입 상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 상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개 미국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의 생산회사, 14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부품의 제조사, 49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제품의 수입회사, 18개 외국생산자와 53개 구매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거하여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제품은 미국 시장에 수출량이 급증하고 낮은 가격으로 국내 동종제품과 직접 경쟁해서 미국 국내 생산자가 소득과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였고 국내 산업의 가격을 억제하여 산업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태양광 전지제품의 대미수출은 2008년에 2억 3,300만 달러에서 2010년에 12억 1,000만 달러로 약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중국 측에는 미국 국내 시장의

88) 張興科, “美國對華光伏企業的雙反調查對我國的影響及對策”, 中國高新技術企業 3(4), 2012, p.4.

수요량 증가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자국의 경쟁력 요소로 인한 산업발전 둔화 문제를 중국 제품의 경쟁 타격으로 돌리고, 중국 업체들의 발전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상계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⁹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수요가 뚜렷이 증가 되었지만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수량이 현저히 증가되기 때문이며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수요량이 급증하고 원가가 대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미국 국내산업은 결손 상태에 있고 많은 성능 지표가 저하돼서 18개월 동안 7개 미국 태양광 전지제품 생산회사가 폐업 또는 생산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미국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⁹¹⁾

다. 조치가능보조금 및 특정성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사는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반보조금조사 요청에서 주장한 중국의 조치가능보조금의 종류는 <표IV-3>에 나타나듯이 과거의 사례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환율조작에 대한 위안화저평가가 상계관세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2011년 11월 중국산 태양광 전지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을 때 환율조작에 의한 위안화저평가를 제외한 다른 보조금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는 소송의 강제응소 기업에 대하여 선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대규모 조사에서 6-7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한데 이 사건에서 더 높은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려고 대미수출량이 가장 많은 Suntech Power 및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2개 중국 태양광 전지 제품 생산기업이 강제응소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하여 다른 중국 태양광 전지 제품 생산업체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태양전기제품 생산업체에게 제공한 대

89) 崔春紅, “中美光伏貿易戰”, 現代工業經濟和信息化, 3(1), 2012, p.6.

90)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es.mofcom.gov.cn/caescms>)

91) 박월라·사딕호드자예브 세르조드·나수업·여지나·마 광,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2011, p.167.

출 우대나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아니고 대부분 환경 보조금과 산업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모든 첨단기출기업에다 적용되어서 보조금의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고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IV-3>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서 포함된 조치가능보조금

보조금 종류	주요 내용
환율조작에 의한 위안화저평가	현재 위안화는 약 50% 저평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중국 태양전지 생산업체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이는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라고 간주 되는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됨.
적정가격 미만의 대가로 투입요소 제공	태양전지 생산 소재인 폴리실리콘, 알루미늄의 저가 제공, 전력, 용수, 토지 등의 저가 제공
조세우대 프로그램	부가가치세 감면 및 환급
우대 대출	특혜성 대출 및 무담보 신용 대출
수출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녹색기술 수출 보증 및 보험 지원

자료: 박윌라·사티호드자예브 세르조드·나수엽·여지나·마 광,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2011, p.239.

3) 결과

2012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결정체 실리콘 태양광전지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 최종판정을 발표하였으며 대표적인 기업 중 Suntech Power사는 반덤핑 세율 31.73%, 상계관세 14.78%로 합계 46.52%,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사는 반덤핑 세율 18.32%, 상계관세율 15.97%로 합계 34.29%로 이루어졌다. 제외한 나머지 59개 수출 업체에 대한 반덤핑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25.96%와 15.24%로 합계 41.2%로 산정하였다.⁹²⁾ 이 사건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 중 최대 규모의 분쟁이고 동시에 신재생

92)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에너지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상계관세 조치 사례에 해당하였다. 중·미 양국 간에 무역 구제 분쟁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화학제품, 철강, 종이 제품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점차 첨단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인다.

미국의 뒤를 이어 EU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시작하였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출량이 대폭적인 감소되고, 생산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많은 생산기업이 도산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외 경영전략 배치와 산업의 재편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2. 한·미 하이닉스 DRAM 보조금 분쟁

1) 분쟁의 배경 및 경과

1990년대 세계적 반도체의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시장 불황 때문에 각국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하이닉스는 1999년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한 후 현대그룹의 계열분리로 탄생하였다. 부채비율이 높고 유동성 문제가 생긴 하이닉스는 2000년 12월 시티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으로부터 8000억 원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지급받고, 2001년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지원도 받았다.⁹³⁾

2001년 11월에 Micron Technology라는 미국 기업은 한국산 ‘DRAM과 DRAM module반도체 상품’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미국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여 미 상무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접수하여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시작하고 조사개시를 공지하였다.⁹⁴⁾

2002년 12월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하여 구체적 세금 감면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부채탕감,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 전환사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직접 제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

93) 김은상, “국제통상 정책에 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p.22.

94) SK하이닉스 (<https://news.skhynix.co.kr>)

은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보조금을 받은 D램 제품을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인정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2003년 6월에 미국 상무부는 조사기간 중에 모든 한국 정부 주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관련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하이닉스에게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는 조치가능보조금 손액 비율이 0.01%으로 나타나서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으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개시 공지한 2002년 11월부터 최종판정 내린 2003년 6월까지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 의문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총 다섯 차례의 양자 간 상계관세 부과 유예협의를 실시했는데 Micron Technology 회사의 불리한 의도 때문에 파멸하였다. 따라서 2003년 8월에 한국은 WTO에서 한·미간의 상계관세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004년 12월 패널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이 한국 정부 신용공여행위의 개입 여부 및 보조금 지원의 특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미국의 주장을 물리쳐서 한국이 승소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서 또 WTO 상소 기구에 상소하였다. 이 항소심사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이 패소하게 되었다. 더 이상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이 분쟁의 결과가 확정되었다.⁹⁵⁾

95) WTO DS29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96_e.htm)

<표IV-4> 한·미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의 주요 경과

개요	일시	주요 경과
상계관세 판정	2002년 11월	미 Micron Technology 회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제기
		미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가 반보조금 조사 개시
	2002년 12월	미 무역위원회의 피해 예비판정
	2003년 4월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2003년 6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한 정부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대해 WTO 제소
	2003년 7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2003년 8월	한 정부가 미 무역위원회의 상계조치 최종판정에 대해 WTO 추가 제소
WTO 패널	2004년 1월	WTO 패널 설치
	2004년 12월	WTO 패널 최종보고서 당사국 배치
	2005년 2월	WTO 패널보고서 회람-한국 승소
미국 상소	2005년 3월	미국이 패널 판정에 대해 WTO AB 에 상소
	2005년 6월	상소 보고서 회람-한국 패소
일물 재심	2008년 7월	상계관세 유지 여부 일물재심 개시
	2008년 8월	미 상무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철폐

자료: 하이닉스반도체 대외 공개 자료에 참조

2) 분쟁의 주요 쟁점

한국과 미국은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에 대한 주요 쟁점이 하이닉스에 대한 신용 공여행위에 한국 정부 개입 여부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특정성이 존재 여부이다. 양국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의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여부

미국 상무부는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한국정부가 은행이나 채권단 등 정부

소요한 금융기관을 지시하여 한국 하이닉스와 기타 반도체 기업들에게 은행대출, 전환사채 발행, 만기일 연장, 부채유예, 부채의 출자전환, 자금조달, 당좌대월의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관련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의 정부인사, 정부 지분, 정부 정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이런 지원이 금융기관의 상업성질의 조치에 의거하여 자율적인 상업 행위이고 정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⁹⁶⁾

나.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 존재 여부

WTO 보조금협정 제2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보조금이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선정할 때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지급한 보조금이 상계관세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인정된다.⁹⁷⁾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하여 신디케이트론 대출을 제공한 시티은행과 신속인수제도를 지원한 산업은행이 정부기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이런 금융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고 대출 신용공여 결정에 지시를 내리고 특정한 현대그룹에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총 244조 1천 60억 원 채무면제, 특히 하이닉스의 부채는 총 120조 170억 원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 조치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제공한 지원이고, 회사채 신속인수에 대한 지급대상도 하이닉스를 뿐만 아니라 현대상선은 6, 290억 원, 현대건설은 4, 573억 원, 현대유화는 320억 원, 쌍용양회는 5, 261억 원, 성신양회는 1, 240억 원 등에도 적용해서 특정성에 달하지 않고 WTO 보조금협정 위반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였다.⁹⁸⁾

3) 결과

2005년 6월 WTO 상소기구는 패널의 특정성에 대한 판정을 번복하여 한국이 패소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규정에

96)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https://disputecase.kr/155>)

97) WTO 보조금협정 제2조.

98)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https://disputecase.kr/155>)

따라 한·미 하이닉스 D램 분쟁의 결과가 확정되었다. WTO 상고기구는 패널이 위임과 지시의 개념에 대한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제시하였다. 위임(entrust)은 국가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책임을 수여하는 행위인데 지시(direct)는 국가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압력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결국 패널은 위임과 지시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는데 상수기구는 이 오류를 반복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특정성이 존재해야 상계관세 조치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패널은 한국 정부의 혜택부여와 특정성에 관한 미국 상무부의 판결이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WTO 상소기구가 보조금의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패널의 결정을 반복하였다.⁹⁹⁾

<표IV-5>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판정세율

일시	심사단계	상계관세율
2003년 3월	원심판정	44.29%
2006년 3월	제1차 연례재심	58.11%
2007년 2월	제2차 연례재심	31.86%
2008년 3월	제3차 연례재심	23.78%
2009년 2월	제4차 연례재심	4.7%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에 참조.

WTO 상소기구의 최종판정을 내린 후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총 5차 상계관세 연례재심을 실시하였으며, <표V-5>에서 알 수 있듯이 상계관세 부과율을 제1차 58.11%에서 제2차 32.86%, 제3차 23.78%, 제4차 4.91%로 대폭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에 과납한 상계관세 예치금 약 400만 달러를 반환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2007년에 하이닉스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제5차 연례재심을 실시할 때 상계관세 부과율이 실시

99) WTO DS29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96_e.htm)

적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2008년 10월 Micron Technology 회사가 참여 포기해서 공식적으로 상계관세 철폐된 것으로 밝혔다.¹⁰⁰⁾

한국의 패소는 한국 국내 경제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해당 기업은 정확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 자료 및 협조 요구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문제점 및 시사점

WTO 체제 출범한 후 보조금협정의 체결은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계관세제도의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보완해서 공정한 국제무역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특정성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시장경제, 개발도상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완전하고, 경제 발전과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제공한 허용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많은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¹⁰¹⁾

개도국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형식의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들은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산업에서 주요 수입규제조치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보조금정책은 국제 경제적으로 민감하고 세계적인 보조금분쟁의 관련 국가와 산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양국의 대표적인 보조금분쟁 사례를 분석을 통해 이들 보조금분쟁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당시의 세계 경제 상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발전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100) 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확정 (<https://news.skhyunix.co.kr/>)

101) 손기윤, “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0, 34(2), p.700.

나 상업의 발전과정은 개개인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살펴보고 주의를 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무역 분쟁을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정부와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 중국의 보조금 문제점

현재 세계적인 경제정세를 보면 코로나의 영향을 미쳐서 무역보호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일부 나라는 중국 및 기타 경쟁 산업 가진 국가들을 겨냥하여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역의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다른 국가에 대해 새로운 무역 제재를 실시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고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보조금문제가 지속적으로 무역장벽의 초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일부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논쟁에 따라 초래된 통상마찰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는 경제체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관련된 국유 기업과 국유은행의 문제도 불가피하게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정책의 대내 복잡성 및 대외 불투명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보조금문제의 하나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지위 및 시장왜곡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WTO 회원국의 시장경제지위의 확정에는 덤핑과 보조금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데 관계될 뿐만 아니라 덤핑과 보조금 규모의 계산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WTO 회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 각 WTO 회원국들은 비교적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주로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판단한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약속한 WTO가입의정서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및 덤핑 판단 시 가격의 비교에 대하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에 관한 적용 문제는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회원국이 대체국가의 기준으로 덤핑 및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

는다.¹⁰²⁾ 2016년 12월 WTO가입의정서 제15조(a)(ii)의 만료로 다른 회원국은 더 이상 중국에 비시장경제지위의 개념과 대우를 적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WTO 회원국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럽은 제15조(a)(ii)가 만료되기 전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새로운 EU 반덤핑 및 상계법 개정 제안을 제출하여 원래의 비시장경제국가의 목록을 취소하고 시장왜곡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¹⁰³⁾ 일단 시장왜곡은 많은 국가가 덤핑과 보조금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 중국은 오랫동안 다른 국가에서 반덤핑과 상계 조치에 억눌리고 더 높은 세율로 평가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경제 지위의 확정 및 시장왜곡 문제에 대한 주목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대한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문제도 쟁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보편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나 은행이 정부의 공공 정책 사이에 특정 연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공공기관 범주에서 국유기업, 국유은행, 산업기금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회원국은 정부담보, 비상업적 조건의 부채 대출자금, 비상업적 조건의 주식 투자를 위한 정부 투자 기금 등 문제를 주목하도 국유기업에게 또는 국유기업이 다른 관련된 회사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간주한다.¹⁰⁴⁾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이 보조금의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이 되었는지 여부,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출 또는 보증, 지분투자 등의 행위가 존재 여부, WTO 보조금협정 중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 여부, 급여의 수여 및 획득이 혜택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조금의 판단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국유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남아 있다. WTO는 국유기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며, 국유기

102)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103) 王萌, “我國遭遇反補貼調查的現狀與對策”, 財政科學(10), 2019, p.104.

104) 최창환·고정오, “WTO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상 공공기관 판단기준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 2020, 21(3), p.40.

업의 정의 범위는 보조금규정의 적용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국가가 국유기업의 정의 범위에 대한 초기 국유기업에서 국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 확대하면 국유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수 있고 국유기업 간 원자재 공급 및 서비스 구매, 국유상업은행과 국유기업 간 자본거래 등의 활동에 대하여 빈번한 상계조사를 발생할 리스크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에 대한 깔끔한 전돈과 더 깊은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반보조금규칙은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조사 및 조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중국 국내의 보조금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수출국 영토 내의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조사 및 조치할 수 있지만, 최근 유럽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상계조사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1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집트에서 중국 기업이 설립한 자회사가 중국 정부 또는 국유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처음으로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이집트 관련된 제품에 대한 10.9%의 상계관세를 과한다는 경정을 발표하였다.¹⁰⁵⁾ 이번 판결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미한다. 2020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반보조금 혜택 및 특정성 조항에 대한 수정”을 발표하고 보조금의 혜택 계산 및 특정성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당해 6월 중국산 와이어로프 제품에 대한 처음으로 위안화 저평가가 보조금으로 판단되어 반보조금조사 개시하였다.¹⁰⁶⁾ 이러한 새로운 반보조금 규정은 중국 정부와 기업에게 큰 도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및 제3국 시장 협력에서 병목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심각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2) 중국의 대응전략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반보조금 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105) 중국무역구체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106) 중국무역구체정보센터 사건공고 (<http://cacs.mofcom.gov.cn/cacscms>)

다.

첫째, 국내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준수하여 보조금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하여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보장하고 시장 지향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WTO 보조금협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된 보조금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금융 보조금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금지되어야 하고 핵심기술이 부족한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제품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시장 메커니즘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지원될 수 있다.¹⁰⁷⁾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통제하여 기업에 대한 각급 정부의 재정보조금의 규모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재정보조금의 비중을 통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분야를 조정하여 제공한 보조금은 연구개발과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되어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보조금 정책의 제정과 실시에 대하여 국유기업, 집체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고 특히 정부와 국유기업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은 이미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 기업의 재물, 인사, 상품, 생산, 공급, 매매 등 경영활동을 직접 관리 하지 않고 국유 은행도 이미 상업화 되고 국유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완전히 시장 조건에 따라 진행 하고 있다. 대부분 국유기업 체제전환을 완수 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 권리와 책임이 명확, 회사의 법인 관리 구조를 점차 보완 되고 시장특성과 상업속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유기업을 선호하는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시켜야 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를 잘 파악하며 보조금구조를 보완해야 한다.¹⁰⁸⁾ 또한 중소기업에 편중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연구경비를 사용하고 정부지원의 형식으로 중소기업이 신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방법에

107) 박월라·사덕호드자예브 세르조드·나수엽·여지나·마 광,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2011, p.211.

108) 姜增偉·姜春力·鄭偉, “積極推進補貼机制改革,妥善應對反補貼泛化趨勢”,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中國智庫經濟觀察, 2021, p.164.

대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의 보조금 지원 방법을 배워서 공공과학 기술서비스체계에 연구개발,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업 간에 산업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의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협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법에 의해 강화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독립부서를 설립하여 『공평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 (잠정)』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의 제반 보조금 정책과 실천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각급 정부의 보조금정책을 규범화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시장의 공평경쟁을 확실하게 수호한다.¹⁰⁹⁾ 기업은 응소 준비 작업을 잘하고 정확한 응소 전략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조사기관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 만족할 만한 설문지를 제공해야 불리한 사실 및 불리한 추정의 운용을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시장경제 운영방식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협회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련 정책과 시장상황을 잘 알고 기업들에게 컨설팅, 감독,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 산업이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량에 대하여 계획, 조정 및 조기경보를 실시하여 수출국에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품에 대한 각국의 품질표준, 기술표준과 시장 표현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산업의 발전 현황과 미래를 전면적으로 깊게 이해하여 산업 내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위한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¹¹⁰⁾ 기업이 상계관세 소송에 달했을 경우 산업협회는 정부에 제때에 반영하고 기업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방면에서 중국의 보조금문제에 대한 강렬한 불만과 비난에 대해 중국은 침묵하지 말고 중국이 다자간 보조금 규율을 준수하고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의

109) 姜增偉·姜春力·鄭偉, “積極推進補貼机制改革,妥善應對反補貼泛化趨勢”,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中國智庫經濟觀察, 2021, p.165.

110) 王光, “WTO改革背景下中國財政補貼政策空間分析与應對策略”, 上海對外經貿大學學報(06), 2021, p.12.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정기적으로 국내 보조금항목의 구체적인 정보를 WTO에 공개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보조금의 성격과 정도를 판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금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의 보조금규정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¹¹¹⁾ 또는 다른 국가의 보조금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상계관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보조금조사 및 상계조치를 자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국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경쟁을 부추기려는 국가에 대한 억제재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3) 한국의 보조금 문제점

본 연구에서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도를 비교하여 대표적인 보조금분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한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현황에 관한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대한 보조금 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보조금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피소국 중의 하나인 반면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타국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 유리한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공정한 무역거래를 수호하는 한국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려고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받은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당하게 전략적인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사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청강 및 금속제품, DRAM 등 기계류 및 전자장비, 그리고 고무, 종이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를 많이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부과 범위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 편인데 상계조치를 발생할 때 다른 산업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종제품

111) 周一帆, “美歐日WTO補貼規則改革方案評析及中國應對”, 太平洋學報(07), 2022, pp.82.

뿐만 아니라 철강, 반도체 등의 중간재 생산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최종제품 생산기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¹¹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보조금 정책을 보완하여 보조금의 규모, 구조, 지급방법에 대한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의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세계 경제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억제할 목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계관세 조치를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 왜곡, 통화저평가 등내용을 도입한 새로운 반보조금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WTO 보조금협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세계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반보조금 규칙을 구축하려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이번 조치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한국도 각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칙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과 중국이 투자한 한국 기업에 주목하여 제3국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³⁾ 한편,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나서 개도국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성도 있다.

4) 한국의 대응전략

첫째, 상계관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는 주도적으로 보조금분쟁을 일으키는 무역보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경쟁 산업들에 대하여 동종제품을 국내 생산업체가 상계관세조사를 신청할 때 WTO 보조금협정과 국내의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에 바탕으로 국내산업을 적당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¹⁴⁾ 무역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상품에 대한 필요한 상계조치를 부과하는 행위는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한국의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태도를 세계적

112) 류한열, 『상계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 기업 지원 전략』, 산업연구원, 2019, pp.20.

113) 박월라·사딕호드자예브 세르조드·나수업·여지나·마 광,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2011, p.203.

114) 손기윤, “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0, 34(2), p.704.

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제조국의 역할 으로서 보조금분쟁을 처리하는 경험과 대응전략을 배울 수 있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국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다.

둘째, 국내 보조금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보조금 마찰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 보호무역주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신 상계관세제도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산업이 공정한 거래환경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¹¹⁵⁾ WTO 보조금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초점을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 연구 개발,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분야로 전환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주목하고 중간재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는 기술적인 보조금 조건의 제정을 통한 혜택의 최소화하고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된 재무활동의 경우 해당 대출 등의 지급방법이나 시기 조절의 형식을 통해 상계관세의 판정세율을 크게 내릴 수 있으며,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지급조건 변경 시점으로 보는 규칙을 활용하여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게 조절할 수도 있다.¹¹⁶⁾

셋째, 항상 국제적인 보조금에 관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국의 보조금정책과 상계 관세에 대한 규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한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또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까지 경영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¹¹⁷⁾ 또한 WTO 보조금협정의 보 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여 WTO 보조금협정의 개혁은 한국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WTO 보조금협정 내용상의 문제점

115) 김은상, “국제통상 정책에 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pp.59-60.

11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통상법무정책, 2021, p.194.

117) 이정희, “WTO 및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p.68.

에 대하여 깊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와 함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유리한 글로벌 반보조금 규정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 결론

1. 요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미 무역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도 국제정세가 긴장된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무역구제수단과 비관세무역장벽을 실시하므로 무역마찰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은 각종 수출 장려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수출을 자극하는 반면에 선진국은 상계관세의 부과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입제한조치로 취하고 있다.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경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벌 보조금 분쟁에 관련 국가와 업종의 범위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보조금협정과 한·중 양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하면서 한·미·중 세 개 국가의 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비교하여 대표적인 보조금 분쟁을 파악해서 양국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해서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내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준수하여 보조금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국유기업 간에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얻어냈다. 한국은 상계관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의 초점을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 연구 개발,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분야로 전환하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무역통상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이 강화하여 함께 경제 글로벌화 과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계관세 조치는 더 높은 빈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국정부와 국내시장에게 초래된 영향을 중시하여 국내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서 관련된 외국 새로운 정책과 동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새로운 공정한 반보조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안계 및 방향

본 연구는 반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여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보조금분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보조금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은 한국, 미국,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국가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련 정책의 이해와 분석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칙의 일부만 선택하였으며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국가 산업을 대표하는 두 사례만 골랐으며 사례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구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반보조금에 대한 최신 제도 규칙 및 세계 무역 분쟁 동태적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무역협정과 상계관세와의 관계에 대한 방향으로 더 깊게 연구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상만, “WTO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 (DS 414)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4, 43(0), pp.1165-1200.

김정수·심재희, 『무역정책론』, 피앤씨미디어, pp.162-177.

김지은,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12(2), 2021, pp.96-117.

라공우, 『중국무역관계법』, 탐북스, 2017, pp.141-151.

류한열, “수입국의 상계관세 결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수출국의 보조 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34(1), 2021, pp.85-104.

류한열, 『상계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 기업 지원 전략』, 산업연구원, 2019, pp.12-25.

문희은·박도연, “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05(94), 2022, pp.165-18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통상법무정책, 2021, pp.184-195.

손기윤, “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0, 34(2), pp.689-708.

안덕근·유지영·김민정,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2015, 06(123), pp.9-46.

이천기·강민지,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6), 2020, pp.1-19.

정재호·이재민, “정책연구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14, 214(0), pp.36-38.

조영진,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2013, 10(113), pp.82-108.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pp.108-129.

최창환·고정오, “WTO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상 공공기관 판단기준 연구”, 한국 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 2020, 21(3), pp.35-48.

<외국문헌>

周一帆, “美歐日WTO補貼規則改革方案評析及中國應對”, 太平洋學報(07), 2022, pp.74-86.

張月姣, “中國在WTO訴美國反補貼措施案中勝訴的意義及啓示”, 國際法研究(03), 2022, pp.3-16.

馬忠法·孫玉山, “美國對華反補貼：趨勢、原因及應對策略”, 大理大學學報(03), 2022, pp.1-9.

王光, “WTO改革背景下中國財政補貼政策空間分析与應對策略”, 上海對外經貿大學學報(06), 2021, pp.5-14.

姜增偉·姜春力·鄭偉, “積極推進補貼机制改革,妥善應對反補貼泛化趨勢”,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中國智庫經濟觀察, 2021, pp.171-176.

劉梓怡, “美國對華的貿易救濟調查及應對策略研究”,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21, pp.1-48.

王萌, “我國遭遇反補貼調查的現狀与對策”, 財政科學(10), 2019, pp.100-106.

마광, “중국의 상계관세제도와 실행에 관한 연구 -미국산 방향성 진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판정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1, 35(0), pp.405-433.

Dukgeun Ahn·Jieun Lee,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1, 14(2), pp329 - 368.

Rachel Brewster·Claire Brunel·Anna Maria Mayda,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 Review of the WTO Appellate Body’s Ruling in US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World Trade Review, 2016, 15(2), pp327-349.

Sherzod Shadikhodjaev,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Unilateralism of Special Economic Zon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21, 24(2), pp381 - 402.

Thomas J. Prusa·Edwin Vermulst, “China-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exporting US AD/CVD methodologies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World Trade Review*, 2014, 13(2), pp229-266.

<웹사이트>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s://www.wto.org>)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위원회(<https://www.kt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

SK하이닉스홈페이지(<https://www.skhynix.com>).

중국무역구제정보센터(<http://cacs.mofcom.gov.cn>)

중국상무부(<http://www.mofcom.gov.cn>)

중국해관총서(<http://gdfs.customs.gov.cn>)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 and China's Response Strategy by Case Analysis of Countervailing Duty

Fan-Zh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Corona pandemic is not over in worldwide,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still ongoing,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also causing international tensions, and Europe is facing a crisis of energy shortage. In this context, new trade protectionism resurface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countries use various trade remedies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and the scope of trade frictions will continue to expand.

Developing countries offer various types of export bonuses and subsidies to boost exports, while advanced countries impose tariffs as a major import restriction measure to protect the domestic market. Since the subsidy policy of each country is very sensitiv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number of countries and industries involved in the global subsidy dispute is expected to continue to expand. Therefore, this study studied the contents and provisions of the WTO general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mpensatory tariffs,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measures of compensatory tariff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o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mpensatory tariff systems of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will

learn about representative subsidy disputes under the WTO system,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s and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propose problems in countervailing duties and investigations, and discuss strategies for future improvement.

As one of the world's economic powerhouses and important trading partners,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jointly push forward the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order to pursue a fair trade and trade environment. Anti-dumping measures should not only focus on higher frequency, more attention will be a greater impact on domestic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measure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of internal strategic adjustment of domestic subsidy policy, prevention, strengthen the role of the trade commission,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the new policy, new dynamic analysis international, a voic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work hard to build new rules of anti-subsidy in the world.